

외국 법인 등의 국내에서의 채권 발행

김상만*

I. 머리말

국제 채권(International Bond)이란 발행자가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판매하는 채권을 말하며, 표시통화와 발행국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외국채(Foreign Bond)와 유로채(Euro Bond)로 구분된다. 외국채는 발행지의 법정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발행지에 따라 아리랑본드(한국), 사무라이본드(일본), 양키본드(미국) 등으로 불리고, 유로채는 발행지 법정통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발행국가에 따라 김치본드(한국), 쇼군본드(일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¹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되는 외국채를 ‘아리랑본드’로 명명하게 된 것은 지난 1995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처음으로 원화표시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당시 주간사였던 한국산업증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 명칭을 공모한 결과 ‘호돌이본드’나 ‘김치본드’를 제치고 ‘아리랑본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² 그 이후 베어스텐스(Bear Stearns)사가 2006년 국내에서 미달러화 표시채권을 발행할 때 그 명칭을 ‘김치본드’로 명명하게 되었다.³

일반적으로 발행인이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국가에서 요구되는 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자국과 발행국가의 공시기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해당 발행국가에서의 자금조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경우에 한하여 국제채권의 발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외국 발행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발행인이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발행 추진(2006. 5. 23).

2 문화일보, “오피니언-아리랑본드,” 2003. 1. 25.자.

3 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주 1).

II. 관련 규정의 연혁

1. 원화표시채권 발행 관련 규정

외국 발행인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 발행은 1995년 5월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채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이 1995년 9월에 액면총액 800억 원의 원화표시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⁴ 1996년 4월에는 위 규정이 폐지되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기관 기타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 및 외국 법인 발행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97년 4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액면총액 950억 원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고, 1997년 5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액면총액 948억 원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원화표시채권은 국내 채권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발행규모나 발행빈도 측면에서 그다지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발행자도 국제금융기구와 한국계 현지법인에 국한되어 있다.⁵

2. 외화표시채권 발행 관련 규정

2004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외국 법인 등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인 원화표시채권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4년 12월 30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즉,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

는 증서로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사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⁶ 또한 2006년 6월 9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채권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에 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중 원화표시채권에 대해서만 등록발행이 허용되던 것을 모든 채권이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외국 법인 등의 외화표시채권 발행절차가 간소화되었다.⁷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미국의 베어스틴스사가 2006년 6월 액면금액 미화 3억 달러의 미달러화표시채권을 국내에서 모집한 이후,⁸ SK해운의 영국 현지법인인 에스케이쉬핑 유럽 피엘씨(SK Shipping Europe, PLC.)사가 2007년 9월 액면금액 미화 5,000달러의 미달러화표시채권을 국내에서 모집하였고,⁹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법인인 기아모터스 매뉴팩처링 조지아 인크(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Inc.)가 2009년 12월 액면금액 3억 달러의 미달러화표시채권을 국내에서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¹⁰

4 허항진,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9, 191면.

5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증권예탁결제원, 2005, 437면.

6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 (2004.12.30 개정).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국법인등의 발행채권을 등록대상 채권으로 지정(2006. 6. 9).

8 금융감독원 DART, 더베어스틴스컴퍼니인크,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6. 6. 27).

9 금융감독원 DART, SK Shipping Europe, PLC.,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 9. 18).

10 금융감독원 DART, 기아자동차,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공시(2009. 12. 11).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고려사항

1. 발행인 적격

현행 법령상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 법인 등'은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및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나)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및 (다)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이다.¹¹ 당초 1996년 5월 제정된 국제금융기구의 원화표시채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국내에서의 원화표시채권 발행이 허용된 이후, 1996년 4월 위 규정을 대신하여 새로 제정된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등급(BBB) 이상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기관과 설립준거지국에 상장된 기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 후 1998년 11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원화표시채권 발행인의 신용평가규제를 완화하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일 것'을 '신용평가를 받을 것'으로 완화하였다가,¹² 2004년 7월 다시 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발행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 법인 등의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하였다.¹³ 다만, 국내 증권회사가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국제신용평가기관 중 S&P, Moody's 또는 Pitch를 포함함) 중에서 2 이

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¹⁴ 이는 외국 발행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인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국제신용평가기관 중 S&P, Moody's 또는 Pitch를 포함함)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을 받아야 한다.¹⁵

2. 증권신고서의 제출

(1) 증권신고서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로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함)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6개월 동안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도록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및 외국법인유가증권발행규정 개정(1998. 11. 14).

1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2004.7.28 개정) 참조.

14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제2항 제1호 마목;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29> 참조.

1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제1항.

하여야 한다.¹⁶ 위 규정상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일정한 연고자, 발행회사의 임원, 기관투자자 등은 제외한다.¹⁷ 이와 같이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보게 된다.¹⁸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6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증권별 개에서 다시 개별증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¹⁹ 열거된 개별증권의 구분에 따라 같은 종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그중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열거된 개별증권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별로 같은 증권으로 간주하게 된다.²⁰ 이에 따라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사채권은 그 발행일자나 발행조건을 불문하고 그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모두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보게 된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 (i)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ii) 최근 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개별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함), (iii) 회계감사인

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개별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말함), (iv)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개별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함), (v) 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국제신용평가기관 중 S&P, Moody's 또는 Pitch를 포함함)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vi) 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vii) 외국환거래법 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viii) 인수계약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기타 해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ix)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x)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및 (xi)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²¹ 외국 기업 이외의 외국 법인 등의 경우에는 위 첨부서류 중 (i)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외국 정부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함),

16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제2항.

17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제9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19 자본시장법 제4조.

2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2009, 33면.

21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제3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제2항 제1호 및 제4-9조.

(iii)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iv)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및 (vi) 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²² 외국 법인 등이 이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²³

외국 법인 등이 채권의 모집을 위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²⁴ 증권의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이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증권 취득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²⁵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²⁶

(2)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서제도는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²⁷ 현행 규정상 외국 법인 등을 위한 별도의 일괄신고서 제출 적격요건이 없으므로, 외국 법인 등이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발행인과 동일한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²⁸ 이와 같이 사채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i)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일괄신고서에 따라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ii)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iii)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²⁹ 잘 알려진 기업(Well Known Seasoned Issuer, WKSII)이 사채권 모집을 위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행예정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발행예정기간 중 최소 증권발행횟수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³⁰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제금융기구 등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발행인의 경우에는 위 'i)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일괄신고서에 따라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1년간

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제2항 제2호

2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0조 제1항

24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호 본문

25 자본시장법 제21조 제1항

26 자본시장법 제128조

27 금융감독원, 앞의 책주 20), 46면

2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내지 제3항

2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3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i)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ii)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것, (iii)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iv)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v)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vi)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³¹ 국제금융기구 등의 경우에도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증권신고서 기재 관련 사항

(1) 회계기준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모집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외국 법인 등 가운데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i)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 (ii) 위 내용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iii) 외국 기업에 대하여 국내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 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를 해당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³² 그러나 외국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위 (i) 내지 (iii)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³³ 이러한 특례는 2003년 1월 개정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국내 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기 어려운 외국 기업은 국내에서의

증권 공모를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 기업의 증권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으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외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회계기준의 차이 및 그 영향을 설명하는 추가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게 된 것이다.³⁴

(2) 국제공시기준 도입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모집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와 외국 기업 이외의 외국 법인 등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³⁵

㉞ 외국 기업의 경우

- 가.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이사의 확인
- 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모집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
 - (마) 자금의 사용목적
 - (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

31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 참조.

32 자본시장법 제16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3조 제1항.

3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3조 제2항.

34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2003.1.29 개정).

3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가) 회사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마)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바) 주주에 관한 사항
-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자) 부속명세서
- (차)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⑭ 외국 기업 이외의 외국 법인 등의 경우
 - 가.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이사의 확인
 - 나. 발행에 관한 사항
 - 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라. 대한민국의 가맹 또는 출자현황
 - 마. 인수 및 판매
 - 바.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런데 외국 법인 등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증권신고서 서식에 대신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s for Cross-Border Offerings and Initial Listings by Foreign Issuers, IDS)에 맞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고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³⁶ 우리나라 공시항목과 IDS 공시항목은 형식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시내용을 주어진 칸에 채우는 이른바 도표식 방식인 데 반해 IDS는 기업이 공시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식 방식이다.³⁷ 위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³⁸

- I. 이사, 경영진 및 자문인의 신원
 - A. 이사 및 경영진
 - B. 자문인
 - C. 감사인
- II. 공모가액 및 예상일정
 - A. 공모가액
 - B. 공모방식과 일정
- III. 주요 정보
 - A. 요약 재무정보
 - B. 자본전입과 차입
 - C. 공모이유 및 자금의 사용계획
 - D. 투자위험요소
- IV. 발행인에 관한 정보
 - A. 회사의 연혁 및 발달과정
 - B. 사업 개요
 - C. 조직 구조
 - D. 부동산, 공장, 설비 관련사항
- V. 운영 및 재무성과와 전망
 - A. 경영성과
 - B. 유동성 및 자본의 충실성
 - C. 연구개발, 특허 및 면허보유 등
 - D. 추세 정보
- VI. 이사, 경영진 및 직원
 - A. 이사 및 경영진
 - B. 보수
 - C. 이사회 활동
 - D. 직원
 - E. 지분보유 현황
- VII. 주요주주 및 관계자 거래
 - A. 주요주주
 - B. 관계자 거래

3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제1항 제4호.

3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 도입 추진(2008. 1. 10).

38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C. 전문가 및 고문의 지분현황
- VIII. 재무정보
 - A. 연결재무제표 및 여타 재무정보
 - B. 중요한 변동사항
- IX. 공모 및 상장
 - A. 공모 및 상장 세부사항
 - B. 분매계획(배정계획)
 - C. 시장
 - D. 매출하는 주주
 - E. 희석화
 - F. 발행비용
- X. 추가 정보
 - A. 자본
 - B. 회사의 정관
 - C. 중요 계약
 - D. 외환거래 통제사항
 - E. 조세
 - F. 배당 및 지급대리인
 - G. 전문가의 의견서
 - H. 추가서류의 열람
 - I. 자회사 정보
- XI. 증권에 대한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A. 평가기관의 개요
 - B. 평가의 개요
 - C.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의견
 - D. 종합평가결과
- XII. 법적 위험 및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등
 - A. 법적 위험
 - B. 민사책임의 집행가능성
 - C. 이사 등 임원의 면책 관련
 - D.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 XIII. 증권예탁증권의 원주 등 관련 추가정보

* 위 서식에 따라 기재가 요구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설립지국 법령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공시가 의무화된 사항은 이를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함.

위 공시서식에 의한 공시사항 중에는 'XI. 증권에 대한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과 같이 IDS에서 요구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기존 공시서식에 따라 요구되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V. 운영 및 재무성과와 전망-A. 경영성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존 증권신고서 서식에서는 요구되지 않았으나 IDS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XI. 증권에 대한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항목에는 'C.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의견'에 재무정보, 업계현황, 회사의 기술력 및 주요제품(또는 용역)의 경쟁력, 영업활동 및 사업전략 등, 경영조직, 연구·개발, 계열회사, 경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인수인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D. 종합평가결과' 항목에는 인수인이 공모가 적정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치산정에 사용된 가정이나 방법론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³⁹ 그런데 국내 법인이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서도 '인수인의 의견' 항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⁴⁰ 외국 법인의 채권 발행시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상에도 인수인이 공모가 적정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XI. 증권에 대한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D. 종합평가결과'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B. 평가의 개요' 및 'C.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의견' 항목은 기재하여야 한다. 'XII. 법적 위험 및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등' 중 'D.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항목에는 당해 증권의 모집이 적법하다는 것과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외국의 법규·제도에 관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현지변호사 및 국내변호사가 각각 작성하여 서명하고 동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법

39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2호) 서식 '기재상의 주의' 참조

40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4-4조 제4항

를검토의견 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⁴¹ 그 밖에도 일반 증권신고서에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⁴² 이러한 계열회사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또는 IDS에서 인정하는 계열회사의 기준에 비해 넓기 때문에 외국 법인 등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국 법인 등이 IDS에 맞추어 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증권신고서에는 ‘자금의 사용목적’ 항목에 모집총액과 발행비용 및 이를 차감한 순조달액으로 구분하고, 자금의 주된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는 데 반해,⁴³ IDS에 맞추어 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간략한 자금의 사용계획만을 공시하여도 된다.⁴⁴

(3) 대표이사 등의 확인

증권신고서에는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가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⁴⁵ 그런데 이러한 확인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국 법인 등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을 받기 위해 모집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최소한 정정신고

서의 경우에는 서명권자를 대표이사 이외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공시의무

(1)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

국내에서 채권을 모집한 외국 법인 등과 이러한 채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 법인 등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⁴⁶ 그중 ① 채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 법인 등 가운데에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국내에서 채권을 모집한 외국 법인 등의 경우 그 채권의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함)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⁴⁷ 또한 (i) 외국 정부, (ii) 외국 지방자치단체, (iii)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4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상의 주의’ 참조.

4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나목.

43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5-1조.

4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상의 주의’ 참조.

45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46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및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176조 제2항.

47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또는 (iv)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⁴⁸ 또한 외국 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요약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⁴⁹

(2)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외국 법인 등은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⁵⁰ 다만, 외국 법인 등이 주요사항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⁵¹

IV. 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상장

1. 상장신청

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

채권 중 하나의 성질을 가진 것을 ‘외국 채무증권’이라 하는데,⁵² 외국 채무증권의 상장신청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당해 법인과 한국거래소와의 모든 행위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장계약서를 제출한 후,⁵³ 신규상장신청 전에 한국거래소와 상장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국 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⁵⁴ 외국

48 자본시장법 제16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

49 자본시장법 제16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1조.

50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4) 자본시장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6)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522조(합병) 및 제530조의2(분할)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

(1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11)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거래소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12)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51 자본시장법 제16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

5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

5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30조.

5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⁵⁵

(1) 자기자본 : 자기자본이 100억 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2) 발행회사 : 발행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또는 자산유동화채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해외증권시장에 외국 주권을 상장한 법인일 것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외국 주권 또는 외국 주식에탁증권을 상장 또는 등록하고 있을 것

(3) 등록채권 :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일 것

(4)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을 받은 채무증권일 것

(5) 모집 또는 매출 : 해당 외국 채무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6) 발행액면총액 : 해당 외국 채무증권의 발행액면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000만 원 이상일 것

(7)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외국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000만 원 이상일 것

(8) 발행권종 : 전환사채권의 경우 10만 원권의 단일권종일 것

외국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15호 서식에 따른 외국 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서에, (i)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 사본, (ii) 당해 채무증권이 간접발행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탁증서, 인수 또는 매출계약서 및 모집위탁계약서 사본, (iii) 상장대리인선임계약서 사본, (iv) 최근 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v)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국제신용평가기관 중 S&P, Moody's 또는 Pitch를 포함함)의 신용평가서 사본 및 (vi) 그 이외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⁵⁶ 다만 외국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효력이 발생한 증권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⁵⁷

외국 채무증권의 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나, 첨부서류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영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⁵⁸ 이와 같이 작성되는 서류 등의 기재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통화(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외국환시세에 따라 환산함)로 표시하여야 한다.⁵⁹ 외국 채무증권의 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될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나, 외국 채무증권의 상장신청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⁶⁰

5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제1항 및 제43조 :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5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8조 :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 ;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57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58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8조 제1항.

59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8조 제2항.

6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이 규정에 의한 외국회계감사인은 ①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아닌 경우 (i)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ii)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아래 (iv)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iii)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 (iv)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

2. 신고의무

상장외국채무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상장대리인은 다음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⁶¹

- (1)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국 채무증권의 발행
- (2) 상장외국채무증권의 상환 및 매입소각
- (3) 상장외국채무증권에 대한 신탁계약, 발행계약 또는 모집위탁계약의 변경
- (4) 상장대리인의 변경 또는 상장대리인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5) 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의 상장폐지, 매매거래금지 기타 상장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
- (6) 그 밖에 상장외국채무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V. 외국환거래법상 고려사항

1. 증권발행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와 인수기관별 인수내역을 첨부한 증권발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⁶²

2. 계정의 개설 및 자금의 사용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권발행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는 비거주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⁶³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만 사용하

여야 한다.⁶⁴ 이와 같은 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외화자금은 대외계정 또는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으며, 원화자금은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한 후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⁶⁵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 최초로 아시아개발은행에 의한 국내에서의 원화표시채권 발행이 이루어진 이후 외국 법인 등의 국내에서의 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증권회사의 인수와 한국거래소에의 상장을 위하여 발행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외에도 해당 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하는 점, 국제금융기구 등이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점,

에 분포되어 있고,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10만 명 이상인 회계법인이거나 이러한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②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i)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ii)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아래 (iv)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iii)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 (iv) 회원사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2,000명 이상인 회계법인이거나 이러한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4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9조.

62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및 제7-27조 제1항.

63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제4항 제4호.

64 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제1항 단서.

65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항 제9호, 제7-9조 제2항·제5항.

IDS에 맞추어 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에서도 ‘증권에 대한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점,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제출시 매번 대표이사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 법인 등이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활발하게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국제결제통화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